

연구는 연구자에게,  
행정은 행정원에게

자율은 확대하고,  
책임은 무겁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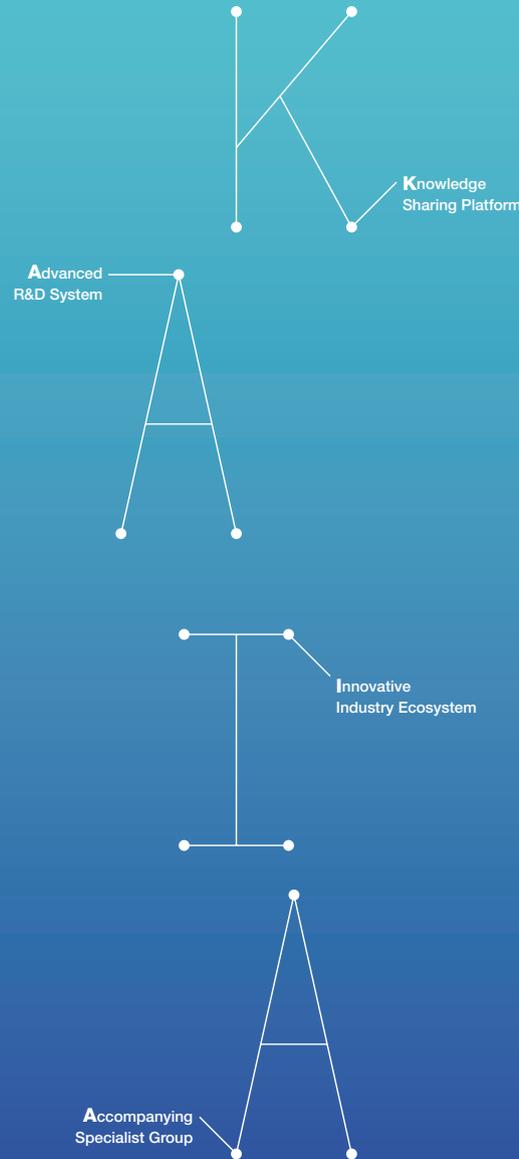


2019년 9월부터

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’  
개정사항이 시행되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 
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 
**연구 자율성 확대** 등의 내용을 담아  
**국토교통 R&D 제도를 강도 높고  
새롭게 개선하여 여러분께 소개 드립니다.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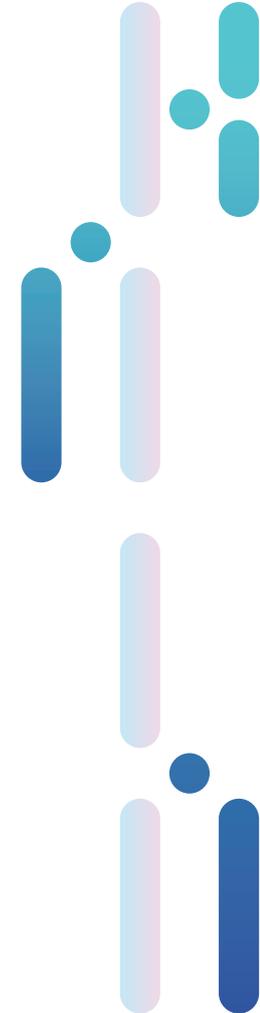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 
**손 봉 수**



[www.kaia.re.kr](http://www.kaia.re.kr)

## 2020년 국토교통 R&D 새롭게 바꿉니다

2020.1



## 연구 자율성 강화

### ○ 행정지원 인력 확충

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상당함에도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줄 수 없고, 기관 지원에만 의존



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 인력의 경우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원 허용

### ○ 민간부담금 납입 마감 연장

협약 체결과 동시에 참여기업에서 민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정부출연금 지급이 가능



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납입 마감을 협약 종료 3개월 전까지로 허용

### ○ 연구시설·장비비 풀링제 도입

연구시설·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은 과제별로 각각 사용하고, 연구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



연구시설·장비 통합관리기관은 일정 금액을 연구비로 적립하고,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 가능

### ○ 개인별 연구수당 최대 지급률 상향

총 연구수당의 50% 이상을 1인에게 지급할 수 없음 (단 참여연구원 3인 이하는 제외 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할 수 없음)



개인별 연구수당 최대 지급률은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%를 초과할 수 없음(단 참여연구원 1인인 경우 예외)

### ○ 예금이자 사용용도 확대

연구개발에 재투자 또는 성과 창출지원, 보호, 활용역량 강화에 사용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



현행 사용용도 외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에 산입 또는 국고납입 가능

### ○ 연구비 세목 간소화

국의 출장여비는 연구활동비로 계상하고,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계상함



유사한 항목이지만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이원화되어 있던 세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

### ○ 중복 예외 기준 명확화

중복 예외기준이 과제의 효율적 관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되어 있음



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, 연구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중복 예외 인정

### ○ 연구비 이월 절차 완화

연구비 이월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필요



다년도 협약과제의 연구비 이월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불필요

### ○ 연구비 이월시 사용 기준 완화

연구비 이월시 동일연구기관의 동일세목으로 사용



연구비 이월시 동일세목으로 이월하여 사용(차년도 본 예산과 통합하여 사용)

## 연구 책임성 강화

### ○ 간접비 회수 기준 강화

직접비의 집행비율이 저조함에도 간접비는 100% 집행하는 경우 연구비 사용의 왜곡 발생



직접비 집행비율이 50% 이하인 과제의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은 직접비 집행비율만큼만 인정하고 초과 집행 금액 회수

### ○ 연구수당 회수 기준 강화

직접비의 집행비율이 저조함에도 연구수당은 100% 집행하는 경우 연구비 사용의 왜곡 발생



연구수당 집행비율은 직접비 집행비율+20%만큼만 인정하고 초과 집행 금액 회수

### ○ 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

박사후연구원과의 근로계약 미체결 사례가 빈번히 발생



박사후연구원이 참여연구원으로 포함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고용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
### ○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보장

학생연구원은 같은 연구를 수행하여도 정당한 기술료 보상에서 제외 사례 발생



협약서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기술료 보상 지급 기준 포함 명시

### ○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기술료 보상 강화

영리기관의 경우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게 정당한 기술료 보상 제외 사례 발생



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기술료 보상을 정부출연금 지분의 10% 이상으로 함

### ○ 연구비 사용내역 입력 기준 강화

연구비 일괄지급 대상기관의 경우 연구비 사용 후 30일 이내 전문기관 연구비시스템에 입력



연구비 사용후 5일 이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

### ○ 제재대상 연구자의 과제 참여제한 명확화

연구자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신규과제 참여제한



신규과제 참여제한 외 연구책임자의 경우 수행중인 과제 협약 해약 조치 및 참여연구원의 경우 수행중인 과제에서 배제 조치

## 연구관리 효율화·행정 간소화

### ○ 연구비 정산 간소화

연구시설·장비비 풀링제 미도입에 따라 전체 연구시설·장비비에 대한 정산 실시



연구시설·장비 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 연구시설·장비비의 정산 면제

### ○ 영수증의 전자적 보존 및 제출 허용

연구비 정산시 종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 저해



영수증은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고, 연구비 정산시 전자문서로 제출 허용

### ○ 공고기간 단축 또는 공고 제외 확대

국가안보, 국제공동연구 또는 국가주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고 제외 가능



현행 사유 외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 단축 또는 공고 제외 가능

### ○ 평가결과 공개 확대

평가결과 공개가 제한적임으로 평가의 공정성·투명성 저하 우려



공고시 정한 경우 선정·중간·최종·추적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

### ○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강화

과제 선정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혜택 미도입



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% 가점 부여

### ○ 평가위원 제척 기준 완화

선정평가위원이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



동일기관에 소속되어 있어도 최하위단위 연구부서가 다르면 선정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 (대학·정출연·특정연의 경우)

### ○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간 명확화

정부납부기술료는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이를 경직적으로 해석(무조건 5년)하는 경우 발생



정부납부기술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화